

전 송

수 신	담당자님귀하		
발신	차정익	날 짜	: 2023년 12 월 27 일
연락처	010-3377-9498	쪽 수	: 표지포함 16매
제 목	진성기숙학원.탐에듀 증빙자료		
☐ 긴급 ☐ 검토요망 ☐ 메모요망 ☐ 답신요망			

귀사에서 요청하신 서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3-048호

2013. 3. 21.

사건번호 2013안정0181
사건명 진성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심인 문귀출(진성학원 대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52-1

주 문

피심인은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한 기간이 20여년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40년 전통'의 대입 기숙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2. '기숙학원 유일의 독서실 별도 시설 학원'으로 광고하여 사실과 달리 대입 기숙학원 중 피심인 학원만이 유일하게 독서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중앙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게재면, 글자의 크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거짓·과장성 여부

17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피심인의 학원이 40년 전통의 기숙학원이라고 광고 하였으나, 실제 피심인은 1988. 2. 25. 설립(사업자등록증 기준)된 학원으로 이 사건 광고 시점까지 피심인이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한 기간은 약 26년 정도이다.⁸⁾

18 따라서,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한 기간이 20여년 임에도 불구하고 대입 기숙학원과 관련하여 40년 전통의 Know-How 축척학원으로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19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신문광고인 '한국최초 기숙학원으로 40년 전통 Know-How 축척학원'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 학원이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한지 40년 이상 되어 풍부한 교육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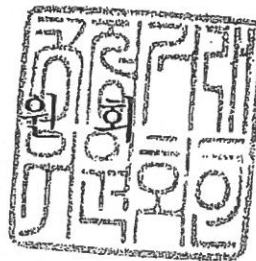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기숙학원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재수생, 학부모 등 소비자들은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의 강사진이나 대입 또는 수능성적 향상 실적, 수상사실, 입지조건, 학원시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조사대상 기숙학원 현황, 언론보도 내용 등을 보건대 피심인은 최초의 기숙학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

정 본 입 니 다.

2013년 3월 21일

공 정 거 래 위



행정주사 김 진



(공정거래위원회)